공 고

⊙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-029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3월 26일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1. 법적근거

-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- 2. 행정처분(예정) 대상자

번호	대상자	주민등록번호	주 소	처분금액	법 령 위반사항	광고 전화번호	광고내용
1	윤*현	931128- *****	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	750만원	정보통신망법 제50조	010-**90-7 341	부동산
2	이*민	880703- *****	대구시 달서구 선원로	375만원	정보통신망법 제50조	053-**01-7 331	부동산

- 3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- 4. 의견제출기한 : 공고문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
 - ※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- 5. 의견제출장소 :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8층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 【(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, 807호(초량동, KCA빌딩) (☎ 051-967-1203, 1206 FAX : 051-967-1208)】